特 輯

生命保險會社의 經營評價制度에 關한 小考

秋 岩 大
(保險監督院·生命保險部長)

◀ 目 次 ▶

Ⅰ. 머 리 말
Ⅱ. 生命保險 經營評價의 槪念
1. 經營評價의 一般的 槪念
2. 生命保險의 經營리스크 管理方法
Ⅲ. 生命保險會社에 대한 經營評價制度
1. 沿革 및 目的
2. 評價項目別 算式 및 標準値
Ⅳ. 外國의 經營評價制度
1. 美 國
2. 日 本
Ⅴ. 現行 經營評價制度의 發展方案
1. 一般的인 規制와의 重複 最小化
2. 評價制度의 時宜性 提高
3. 資產評價의 一貫性 確保
4. 標準値의 合理的 設定
5. 精密分析體制의 構築등
Ⅵ. 맺 는 말

Ⅰ. 머리말

保險去來는 團體的 相互保障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保險會社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危險負擔과 保險料負擔을 대가관계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종래의 保險監督의 理念은 보험료와 보험계약 내용의 결정에 合理性과 公評性을 기하여 보험거래의 등가관계를 확보하고, 保險約款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保障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財務構造의 健全性을 확보하여 支拂能力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多樣하게 擴散되어 가고 있는 消費者 保護의 문제와 金融의 自由化, 國際化 및 同質化 등으로 傳統的인 監督理念에 더하여 보다 質높은 서비스의 제공, 즉, "保險契約者의 實質的 負擔 輕減과 多樣한 商品 및 서비스의 제공" 이라는 이른바 有用性(Availability)의 확대가 새로운 保險監督理念으로 登場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이러한 새로운 觀念에 대한 認識이 없이는 그 存立自體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보험의 有用性 擴大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

험경영의 效率性을 제고하여 그 成果를 保險料率 내지 契約者配當에 반영함과 동시에 蓄積된 노하우와 經營資源을 바탕으로 範圍의 經濟(Economics of Scope)原則[1]에 立脚하여 業務領域의 확대를 통한 原價의 引下와 契約者 및 資金需要者에게 多樣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商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保險政策에 있어서는 法的인 規制를 緩和하여 經營의 自主性과 創意에 의한 자유로운 競爭이 實現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 오늘날 保險監督 最大의 課題는 支拂能力의 確保와 有用性의 확대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로 歸結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經營評價制度는 이러한 保險環境의 變化에 對應하여 監督機關이 最小限의 監督權을 행사하고자 美國등 先進各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험회사의 經營狀態를 定期的으로 評價하여 보험회사의 支拂能力이 惡化되는 과정에 있을 때 그 요인을 찾아 警報시그널을 발하는등 經營破綻에 이르기 전에 強力한 監督權을 행사하고, 경영이 良好한 회사에 대하여는 公示主義 내지 準則主義的인 監督에 그침으로서 경영의 自主性과 創意性을 尊重해 주는 效率的인 監督方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保險市場의 對內外 開放에 따른 회사수의 증가와 國際化의 進展 및 金融의 自由化 추진등으로 多數會社에 의한 競爭體制로 變化되어 가고있고, 消費者 保護의 強化등 周邊與件이 급속히 變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變化에 對應하고자 '84년부터 經營評價制度를 導入하여 經營評價結果 問題點이 發見된 회사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을 促求하거나 經營改善計劃을 徵求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먼저 一般的인 經營評價制度의 槪念과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 管理方法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外國의 經營評價制度를 紹介하고 이를 土臺로 現行 經營評價制度의 發展方案을 模索해 보고자 한다.

II. 生命保險 經營評價의 槪念

1. 經營評價의 一般的 槪念[2]

가. 經營評價의 意義 및 目的

경영평가란 넓은 의미에서 어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통제할 수 없는 經營環境에서 그 기업의 財務的 要素, 人的 要素, 그리고 景氣變動의 對應程度등을 評價機關의 目的에 따라 考察하는 過程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人的要素나 景氣變動의 對應程度, 그리고 具體的인 質的資料(業界에서의 地位, 勞使關係, 經營者의 能力등) 등은 客觀的인 資料蒐集에 어려움이 있고, 評價者의 主觀性이 높아 測定이 곤란하여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등 기업에서 公表하는 計量的 資料를 中心으로 기업의 財務狀態를 評價하게 된다. 이와 같이 財務諸表를 中心으로 評價하는 것을 狹義의 經營評價라고 하며, 이를 財務諸表 分析 또는 財務評價라고도 한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評價者 내지 評價機關의 目

1) 範圍의 經濟란 事業의 多角化(현존의 영업기반을 떠나서 별도의 사업을 외부에서 획득하거나 내부에서 새로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事業間의 強點과 弱點을 서로 補完함으로서 얻어지는 相乘效果를 말한다.

2) 김건우, 경영분석입문(한국경제신문사 1989), pp7-10

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評價의 共通的 目的은 企業의 成長性, 生産性, 收益性, 流動性, 安全性 등을 파악하는데 있다.

成長性은 企業의 經營規模 및 企業活動의 成果가 前期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測定하는 것이다. 人間에게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産業 또는 企業이나 商品도 誕生에서 成長期, 成熟期 그리고 斜陽期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현재의 特定産業 및 企業 또는 製品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중요한 意義를 가지게 된다. 생명보험회사의 成長性을 測定하는 要素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 ① 收入保險料 ② 新契約 또는 保有契約額 ③ 營業利益 ④ 經營資本 ⑤ 附加價値 ⑥ 從業員數 ⑦ 新商品數.

生産性은 企業活動의 能率과 業積을 測定·評價하고 그 發生原因과 成果, 配分의 合理性을 分析하는데 사용되는 比率이다. 過去에는 生産性을 生産에 關係되는 諸要素의 有效한 利用程度를 計量的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만 理解하였으나 오늘날 生産性에 관한 指標는 經營合理化의 尺度라고 보고 있으며, 기업 經營成果를 附加價値 生産性이라는 價値的, 金額的 槪念으로 測定하는 것이 一般化되고 있다. 生産性은 生産量을 從業員數 등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생명보험회사의 生産量 要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 ① 附加價値 ② 收入保險料 ③ 豫定事業費 ④ 豫定利子 ⑤ 危險保險料 ⑥ 新契約額.

收益性은 企業活動의 成果를 나타내는 收益力의 程度를 말한다. 收益性은 一定期間중 기업의 모든 經營政策, 意思決定, 經營活動 등의 結果를 集約한 經營成果를 測定하는 것으로 기업의 債權者, 經營者, 株主등 모두에게 關心이 높은 지표이다. 특히 收益性은 經營者의 業積을 評價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指標는 높을수록 經營成果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收益性이 높으면 반대로 消費者의 負擔이 컸다는 의미가 되며, 結局에 가서는 競爭企業이 많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收益性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消費者의 反應과 競爭者의 움직임을 자세히 觀察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收益性을 測定하는 要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死差損益 ② 利差損益 ③ 費差損益 ④ 總收入 대 純利益 ⑤ 總資本 대 純利益.

流動性은 기업의 短期支給能力을 判斷하기 위한 指標이다. 기업이 他人資本을 이용하였을 경우 滿期가 到來하면 元利金을 상환하여야 하며,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約定期日內에 支給하지 않으면 안된다. 流動性은 기업의 短期債權者들이 가장 중시하는 비율이나 생명보험회사는 支出보다 收入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廣意의 金融機關인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流動性은 評價以前에 基本的으로 갖추어야 하는 要素로 認識되고 있다.

安全性은 기업이 永續的으로 健全하게 經營活動을 할 수 있는가를 財務構造를 고려하여 檢討하는 것으로 健全性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은 保險期間의 長期性 때문에 傳統的으로 安全性을 중시하여 왔다. 생명보험회사의 安全性을 測定하는 要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純資産 ② 總資産 또는 運用資産 ③ 效力喪失解約率 ④ 收入保險料 ⑤ 收支差額 ⑥ 負債比率.

나. 經營評價의 種類 및 方法

경영평가는 評價機關 및 그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外部評價 : 企業外部의 利害關係人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信用評價, 投資評價, 稅務評價, 감사평가, 國家 및 公共團體 評價 등이 있다.

첫째, 信用評價는 金融機關이나 債權者가 貸出 또는 信用을 提供하고자 할 때 債權의 回收可能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評價이다. 따라서 去來相對方의 支給能力評價가 主目的이 된다. 원래 경영평가는 信用評價로부터 출발하였고 최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投資評價는 投資家나 株主가 投資를 함에 있어서 元金의 확보는 물론 충분한 配當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收益性 評價가 중심이 된다.

세째, 稅務評價는 稅務當局이 徵稅를 함에 있어서 課稅所得이나 納稅額이 적정한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稅金의 不足與否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네째, 감사평가는 公認會計士나 監督官廳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財務諸表가 會計의 諸原則에 의하여 作成되었는가를 判斷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다. 주로 合法性 有無를 判定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國家 및 公共團體 評價는 經濟政策 및 財政金融政策 樹立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다. 여기서는 收益性의 程度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되고 있다.

② 內部評價 : 內部評價는 기업내부의 經營管理者나 그 代理人이 經營管理를 함에 있어서 營業成績이나 財務狀態가 적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여기서는 經營內容의 改善이 주된 목적이 된다.

경영평가의 방법은 크게 實數法과 比率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比率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實數法이나 比率法에 의한 평가시 산출된 비율을 比較評價하기 위하여 標準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게 된다.

첫째, 同種產業 전체의 平均値 또는 平均比率을 標準値로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企業의 規模, 會計處理基準, 所在地域등 자료의 同質性에 有意하여야 한다.

둘째, 한 기업의 過去平均値 比率을 標準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업내에서의 經營統制 내지 經營豫測을 목적으로 評價할 때 有用하다.

세째, 評價目的에 따라 同種產業內에서 特定企業들만의 平均値 또는 比率을 標準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理論的인 妥當性이 높으나 實務的으로 資料蒐集 및 計算過程上의 어려움이 있다.

네째, 理論的으로 合理的인 수준을 標準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方法은 論理的이나 資料蒐集 및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다. 經營評價의 限界

經營評價는 通常 企業이 公表한 財務諸表에 의하여 실시하게 된다. 財務諸表에 의한 경영평가는 資料의 蒐集이 용이하고 계산이 간단하며, 산출된 비율을 理解하기 쉽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短點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그에 의존하여 機械的인 평가를 할 경우 지극히 危險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財務諸表에 의한 경영평가의 短點을 要約하여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財務諸表가 財務 및 經營狀態를 정확히 表示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財務諸表는 善

意 또는 惡意로 粉食 또는 加減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경영평가의 목적은 未來의 方向設定에 필요한 基礎情報를 얻기 위한 것인데 財務諸表는 過去의 會計資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市場與件등 經營環境은 급속히 變化되고 있기 때문에 過去의 資料를 基準으로 한 未來의 豫測은 상당한 危險을 가지고 있다.

세째, 같은 業種에 속해 있는 企業사이에서도 會計基準이나 經營方式에 따라 다른 結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一例로서 사업에 필요한 固定資產을 賃借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所有하고 있는 경우는 減價償却方法의 差異등에 따라 損益이 다르게 表示되게 된다.

네째, 일반적으로 標準値로 使用하고 있는 產業平均値는 同種產業內에서는 商品 構成의 差異, 企業規模의 差異가 클 경우 客觀的인 基準으로 使用하는 데에는 問題가 있으며, 營業의 季節性, 企業의 位置, 經營者의 人格등 質的인 要因이 考慮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경영평가의 대상에는 숫자로 표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企業의 信用, 商品의 質的差異, 經營者의 性格이나 能力, 從業員의 士氣 등은 企業經營에 影響을 미치지만 計數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목적이 어떠하든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分析資料의 公正性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公開된 資料를 利用하여야 한다.

둘째, 財務諸表에 의한 分析資料는 會計處理上 同質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째, 경영실적에 의한 單純한 分析보다 그 기업을 둘러싼 環境 및 特殊性을 考慮하여야 한다.

네째, 多樣한 評價手段을 使用하여 綜合的으로 그 結果를 理解하여야 한다.

2. 生命保險의 經營리스크 管理方法

가. 生命保險 經營리스크

생명보험회사는 그 事業을 營爲함에 있어서 多樣한 경영리스크에 直面하게 된다. 이들 경영리스크는 여러가지 觀点에서 把握될 수 있으며, 觀点에 따라 相異하게 區分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영리스크에 관한 具體的인 硏究事例는 英國 計理人會의 Solvency 基準에 관한 보고서(1984.9), 美國 計理人會의 Committee on Valuation의 보고서(1979)와 Combination of Task Force의 보고서(1983－1985)를 들 수 있다.

英國 計理人會의 擔保力 基準(Solvency Criteria)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擔保力 基準을 提示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의 經營危險을 4가지 種類로 區分하여 保險料 算出要素인 · 豫定生存 · 死亡率, 豫定利率, 豫定事業比率과 實際와의 差異로 인해 發生하는 리스크를 각각 A1, A2, A3 리스크로 정의하고 約款貸出, 解約등 約款上 認定되는 權利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A4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다.[3)]

美國計理人會의 擔保力(Solvency)에 관한 보고

3) 영국의 Faculty of Actuaries가 설치한 생보회사의 Solvency Criteria(담보력 기준)에 관한 Working Party의 보고서(1984.9)는 회사를 Insolvency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서 ① Mortality Risk(예정한 사망생존율을 상회하는 리스크) ② 투자리스크(예정이율을 밑도는 운용이율 및 자산과 부채의 Mismatching의 리스크) ③ 경비리스크(예정사업비율을 상회하는 경비지출의 리스크) ④ 옵션 및 보증리스크(계약자대부, 해약등 계약상 인정된 권리행사가 회사에 주어지는 리스크) 등의 4개를 들고 있다.

서에서도 생명보험의 경영리스크를 4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英國計理人會 보고서와의 差異點은 投資리스크를 세분하고 一般企業과 共通된 리스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투자리스크를 信用리스크와 市場리스크로 구분하여 信用리스크를 C1, 市場리스크를 C3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C2 리스크는 保險料 算出要素중 豫定利回率과 實際利回率 즉, 投資關聯部分을 除外한 리스크로 정의하고 一般企業과의 共通 리스크를 C4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保險經營리스크는 保險制度 固有의 리스크와 一般企業에 共通된 리스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保險制度 固有의 리스크는 保險料 算出基礎率과 實際率과의 差異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과 保險制度에서 契約者에게 認定하고 있는 約款貸出, 解約등과 같은 權利行事로 인하여 발생되는 리스크로 區分할 수 있다. 財產運用과 관련된 投資리스크는 信用리스크, 市場리스크, 貨幣리스크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英國 및 美國計理人會의 硏究報告書에는 信用 및 市場리스크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國際化의 趨勢를 考慮할때 換率의 變動등 貨幣리스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1〉 生命保險의 經營리스크의 種類

리스크의 種類	內 用
C1 리스크	-債權의 貸損(default) 및 其他 資產의 稼動能力, 財產價値, 資產運用組織에 대한 損失發生 리스크(貸貸不動產의 貸借人 到產, 天災에 의한 保有資產 價値의 減價 등) ※ 金利變動에 의한 것은 除外
C2 리스크	-保險料 算出에 있어서 C1, C3, C4 리스크에 관계없는 이유로 인한 損失 발생 리스크 ○保險事故 發生率의 豫測失敗 ○費用의 展望差異 ○전염병등 재난에 의한 리스크 등
C3 리스크	-金利變動 리스크 -流動性 리스크
C4 리스크	-破產을 招來하는 모든 리스크(C1, C2, C3 除外) -經營, 法 規制, 競爭條件 등의 變化에 의한 리스크

〈표-2〉 보험경영리스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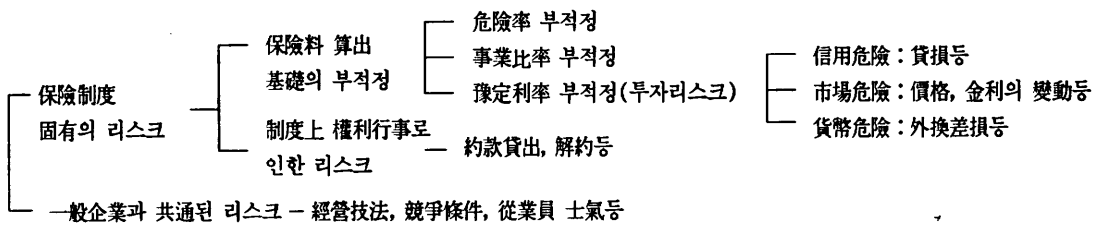

나. 經營리스크 管理方法

우리나라의 現行 保險業法은 保險事業의 營爲主體(제5조), 資本金 및 基金(제5조), 他事業 및 生·損保 兼營禁止(제9조, 제10조), 任員의 資格 및 兼職禁止(제11조, 제12조), 業務 및 財產運用狀況에 관한 報告및 檢査(제14조), 財務部長官의 監督命令(제15조) 등 廣範圍한 監督上의 規制를 두고 있다.

보험사업에 대하여 이와같이 광범위한 監督을 實施하는 것은 保險會社 財務構造의 健全性을 確保하여 經營破綻을 防止하는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生命保險 固有의 經營리스크 管理를 위하여 우리나라 및 外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監督規制의 主要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最低資本金 및 擔保力 確保義務의 賦與

保險會社의 設立時 最低資本金을 규정하고 이를 恒常 唯持하도록 하거나 一定規模 以上의 純財産을 保有하도록 하여 損失發生時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등 보험재산의 維持保全에 充實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② 保險料算出基礎率 및 商品의 認可

保險料算出의 基礎率인 豫定生存·死亡率, 豫定事業費 比率, 豫定利率의 標準比率을 정하거나, 保險數理 專門家가 직접 擔當하도록 하고, 認可節次를 거쳐 상품을 販賣하도록 하므로써 商品設計의 健全性과 保守的인 保險料算出을 圖謨하고 있다.

③ 契約選擇을 통한 道德的 危險의 排除등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制度를 두고 있으며, 保險者는 醫學的 診査, 生存調査등 契約選擇過程을 거쳐 保險契約을 引受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危險 均一性의 原則(Principle of homogeneity of risk)[4]에 充實을 기함으로써 逆選擇을 防止하고 道德的 危險을 排除하기 위한 것이다.

④ 再保險制度를 통한 危險의 轉嫁

再保險은 原保險者가 引受한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다른 保險會社 또는 專業再保險會社에 移轉시키는 것이다. 再保險制度는 危險의 分散이 圖謨되도록 하여 危險率의 豫測失敗에 의한 損失負擔을 最小化할 수 있게 한다.

⑤ 事業費의 統制 및 保守的인 會計處理

事業費 執行의 合理性을 높이기 위하여 事業費 執行基準을 정하거나 보고서를 徵求하고, 新契約費를 保險契約 初期에 償却하도록 하며, 資産評價는 取得原價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時價評價는 低價評價에 한정하는등 保守的인 會計處理로 財務의 健全性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⑥ 財産運用의 制限

財産運用方法을 制限하고, 投資對象別 또는 物件別 投資比率을 정하여 投資對象의 分散化를 圖謨하는등 安全性을 중시한 재산운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⑦ 責任準備金등 準備金 및 充當金의 充實한 積立

責任準備金을 解約還給金式 보다 높은 純保險料式으로 積立하도록 하고, 貸損充當金, 有價證券 評價充當金, 임직원에 대한 退職給與充當金을 充實히 積立하도록 하는 한편, 財産의 賣却 및 評價差額에 대하여 準備金積立을 義務化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危險財務의 原則에 立脚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財務的 準備를 充實히 하는데 있다.

⑧ ALM 技法 등 科學的 管理技法의 利用

보험자산을 調達資金의 金利, 期間, 滿期와 符合되도록 하여 現金의 흐름과 調達資金의 金利變化에 對應할 수 있도록 ALM(Asset & liability matching)技法의 利用을 勸奬하고, 리스크의 合理的 豫測 및 管理를 위한 經營評價制度 등 科學的인 管理技法을 利用하여 經營不實을 早期에 發見, 치유하도록 하는 한편, 監督業務의 客觀性 및 公評

4) 危險 均一性의 原則(Principle of homogeneity of risk)이란 일정한 피보험자 집단에 있어서 개개의 보험사고 발생율은 균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性이 제고되도록 多角的인 手段을 마련하고 있다.

Ⅲ. 生命保險會社에 대한 經營評價制度

1. 沿革 및 目的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經營評價는 1984년 韓國保險公社(現 保險監督院)에서 생명보험회사 綜合經營評價基準을 마련한 것이 그 嚆矢이다. 그 이전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經營效率에 대하여 韓國保險公社 및 協會등에서 調査月報 또는 生協등의 定期刊行物에 主要 經營效率을 揭載하는데 그쳤으며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위 綜合經營評價基準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90사업년도 실적부터 現行 經營評價基準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 保險監督院의 經營評價는 그 目的을 生命保險會社의 自律的인 經營向上 및 內實經營 誘導와 生命保險會社의 指導監督에 필요한 基礎資料로 活用하는데 두고 있으며, 評價基準의 客觀性과 合理性을 높이기 위하여 '87년도부터 保險學者, 保險計理人, 公認會計士와 監督院 任職員으로 구성된 經營評價委員會를 設置 運營하고 있다.

保險監督院에서는 每事業年度別로 各 生命保險會社의 專門募集人 純增加率등 13개 項目의 比率 및 實績의 標準値에 대한 到達與否를 分析하여 成長性, 生産性, 收益性, 安全性을 評價하고 있다.

또한 評價部門別 項目別 比率 및 實績은 保險監督院에서 發刊하는 保險調査月報를 통하여 公表함으로서 一般人이 그 結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內部的으로는 檢査對象機關 選定時에 評價結果를 反影하고, 問題點이 發見된 會社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을 促求하거나 經營改善計劃을 徵求하는 등의 監督手段과 連繫하여 運營하고 있다.

保險監督院에서 實施하고 있는 經營評價의 特徵은 評價資料의 同質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를 일정한 基準에 따라 修正하여 사용한다는 점과 標準値에 의한 絶對評價方法을 使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評價項目의 變動內容 把握 및 追加的 精密分析이 可能하도록 補助項目을 별도로 두고 있다. 保險監督院의 經營評價時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의 修正項目 및 그 基準은 〈표-3〉과 같다.

〈표-3〉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의 修正基準

區 分	修 正 基 準
上場株式	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 終價平均金額(다만, 權利落, 合併등 權利에 현저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결산일까지의 終價平均金額)
非上場株式	發行會社의 最近財務諸表上 純財産額에 대한 所有持分 해당액
債 券	결산일에 보험회사의 貸出 最高利率로 賣却時 證券去來所 賣買 計算方式에 따라 계산한 受取可能 金額
移延資産	계상하지 아니함
責任準備金	保險料積立金 및 未經過保險料를 解約還給金式으로 산출한 금액
財産의 賣却 및 評價差額 準備金	계상하지 아니함
退職給與充當金	결산일에 任職員 一時退職時 所要額
貸損充當金	계상하지 아니함
資産再評價差額	계상하지 아니함(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

2. 評價項目別 算式 및 標準値

〈成長性〉: 3個項目

(1) 專門募集人 純增加率

算 式

$$\frac{\text{當期末 專門募集人數} - \text{前期末 專門募集人數}}{\text{前期末 專門募集人數}} \times 100$$

※ 1) 專門募集人 : 1년이상 근무자로 一般 2級이상인 募集人[5]

2) 募集人 等級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또는 募集人 制度가 없는 회사 : 月所得이 30만원 이상인 募集人 및 代理店數를 專門募集人으로 함.

-標準値 : 5% 以上

-選定背景 및 뜻

일반인에게 生命保險 加入을 誘導하기 위해서는 募集人, 代理店 등의 募集 組織이 介在되게 되며, 募集組織의 良否에 따라 經營實績 및 그 內容이 左右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募集組織은 모집인 중심체제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모집인이 活動初期에 脫落하여 모집인의 大量登錄 및 大量脫落이 생명보험산업의 懸案課題로 되어 있다.[6] 따라서 活動期間이 一定期間 以上이고 業積도 相當水準以上인 優良募集人을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專門募集人으로 보고 그 數의 增加率로 募集組織의 成長勢를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 標準値의 根據

전문모집인 육성의 難易度와 회사수 증가 등을 고려, 장기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6개사의 '88 및 '89 사업년도 평균 비율은 각각 7.7%, 11.6%이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8.2%	1496.8%	1496.8%
평 균	3.2	300.3	22.1
최 저	△10.0	40.5	△10.0
(회사수)			
표준상회	2사	14사	16사
표준미달	4	-	4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총등록모집인중 전문모집인 비율	전문모집인/총등록모집인×100
2. 점포당 전문모집인수	전문모집인/모집점포
3. 모집인 증가율	당기등록모집인/전기등록모집인×100
4. 신규등록모집인 비율	당기신규등록모집인/전기말등록모집인×100
5. 모집인등록 대 탈락율	당기해촉모집인/당기신규등록모집인×100

(2) 保有契約 純增加率

算 式

$$\frac{\text{當期末 保有契約額} - \text{前期末 保有契約額}}{\text{前期末 保有契約額}} \times 100$$

-標準値 : 10% 이상

-選定背景 및 뜻

保有契約額[7]은 將來의 收入豫定額 및 생명보험계약의 危險保障金額의 總和로서의 意義를 가지고

5) 生命保險募集人 手當支給制度 改善指針(財務部 생보 22330-226, '88.5.28)에 生命保險募集人 等級을 專門, 優積, 專業 1級, 專業 2級 一般 1級, 一般 2級, 研修, 修習, 特別研修로 區分하도록 되어 있고, 각 등급별 승강급체계의 세부기준은 각 사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90사업년도중 전생명보험회사의 新規登錄募集人數는 261,850名이고 해촉된 募集人은 226,244名이다.

7) 보유계약액의 산정기준은 보험료 산출기초 및 상품개발지침(재무부 생보 22330-182, '91.5.28)에 규정되어 있다.

있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에 지급할 保險金의 合計額이 보유계약액이 되고, 수입보험료중 將來의 保險金 支給을 위하여 積立한 금액이 責任準備金이 된다. 그러므로 보유계약액에서 責任準備金을 차감한 금액은 장래의 收入保險料 및 投資收益으로 充當할 금액이 된다. 또한 保險事故 발생시에는 約定한 保險金을 支給하게 되므로 有效한 保險契約에 대한 보험금 합계인 보유계약액은 회사가 負擔하고 있는 危險保障金額의 총합계가 된다. 그러므로 보유계약의 增加 및 減少는 생명보험회사의 收益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先行指標로서의 役割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 根據

○보험회사에 대한 監督基準(재무부 보험 1223-2138, '78.11.22)에 의한 最小成長基準(10%)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존 6개사의 '88 및 '90사업년도 평균비율은 각각 35.3%, 47.5% 이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32.9%	2509.9%	2509.9%
평 균	27.7	262.4	34.0
최 저	18.5	△6.3	△6.3
(회사수)			
표준상회	6사	17사	23사
표준미달		1	1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부활계약 순증가율	(당기부활계약－전기부활계약)/전기부활계약 × 100
2. 보험종류별 보유계약 구성비율 변동율	보험종류별 구성비율 증감율의 합계/보험종류수(6) * 보험종류 : 개인보험을 4개종류로 단체보험을 2개종류로 대구분함(이하 같음) * 증감율의 +, － 는 무시함(이하 같음)

(3) 收入保險料 純增加率

算 式

$$\frac{\text{當期 收入保險料} - \text{前期 收入保險料}}{\text{前期 收入保險料}} \times 100$$

－標準値 : 10% 이상

－選定背景 및 뜻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가 保險契約의 대가로서 영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收入의 根本源泉이 된다. 그러므로 보험료 수입액의 增加趨勢를 가지고 평가기간중의 收益獲得 實績을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 根據 : "保有契約 純增加率"과 같다.

기존 6사의 '88 및 '89사업년도 평균비율은 각각 28.6%, 26.5%이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37.9%	2811.8%	2811.8%
평 균	35.2	200.2	35.2
최 저	15.8	△1.1	△1.1
(회사수)			
표준상회	6사	17사	23사
표준미달		1	1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2년도이후 보험료 증가율	당기2년도이후보험료/전기2년도이후보험료 × 100 * 종퇴보험은 제외함
2. 비월납보험료 증가율	당기비월납보험료/전기비월납보험료×100 * 종퇴보험은 제외함
3.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율 변동율	보험종류별 구성비율 증감율의 합계/보험종류수(6)

〈生産性〉: 3個項目

(4) 任職員 1人當 生産性

算 式

當期 豫定維持費
(當期末 任職員數 + 前期末 任職員數)/2

-標準値: 12(8)백만원(매년 10%씩 체증)

* ( )는 신설사(5년미만의 회사)의 표준치임.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事業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중 固定費의 규모는 任職員의 多過와 관계가 있으며[8], 固定費는 豫定維持費를 財源으로 執行되게 된다. 또한 固定費의 회수여부 및 그 水準에 따라 經營成果가 달라지게 되며, 單位當 固定費는 그 성격상 일정하게 되므로 單位當 豫定維持費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任職員의 生産性을 任職員單位當 豫定維持費로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 標準値 根據

實際維持費가 豫定維持費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9]이므로 최근사업년도('89)의 業界 上位 2개사(14.8백만원, 10.4백만원)의 근사치 수준으로 설정하고 物價上昇率 등이 감안되도록 매사업년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하였다. 營業開始後 5년미만의 회사는 營業基盤이 취약하므로 旣存 6개사 수준의 2/3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88-'89사업년도의 기존 6개사 平均을 보면 각각 7.5백만원, 8.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18.5%	7.5%	18.5%
평 균	11.8	10.1	10.1
최 저	6.0	0.02	0.02
(회사수)			
표준상회	2사	-	2사
표준미달	4	24	28

-補助項目: 없 음

(5) 募集人 1人當 生産性

算 式

當期 豫定新契約費+當期 豫定收金費
(當期末 募集人數+前期末 募集人數)/2
*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의한 실적은 제외함.

-標準値: 6백만원(매년 10%씩 체증)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의 募集은 募集組織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募集組織의 중심인 募集人의 活動力을 評價하는데 있다. 募集人의 1차적인 活動目標는 所得增加에 있으며, 募集人 所得의 財源이 되는 것은 豫定新契約費와 豫定收金費가 된다. 따라서 募集

8) 고정비의 대부분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6개사의 경우 임직원 1인당 인건비가 '89사업년도는 5개사가 11.8백만원 내지 12.9백만원을 나타내고 있고 '90사업년도는 4개사가 11.6백만원 내지 12.4백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9) '90사업년도의 경우 이연처리전 예정유지비가 347,039백만원, 실제유지비가 586,315백만원으로 68.9%의 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人의 單位當 豫定新契約費 및 豫定收金費(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保險料 算出基礎上 募集人에 대한 手當이 策定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외)[10] 獲得實績으로 募集人의 活動力을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既存 6개사의 경우 新契約費 및 收金費는 비차익을 시현하고 있으므로[11] 最近年度 既存 6개사의 平均實績의 근사치를 標準値로 하였고 物價上昇率 등을 감안 매사업년도별로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88, '89사업년도의 既存 6개사 平均은 각각 6.2백만원, 7.5백만원이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9.3%	9.9%	9.9%
평 균	7.5	2.3	6.4
최 저	5.0	0.5	0.5
(회사수)			
표준상회	1사	1사	6사
표준미달	1	19	20

－補助項目 : 없 음

(6) 店鋪當 生産性

算 式

豫定新契約費+豫定收金費
(當期末 募集店鋪數+前期末 募集店鋪數)/2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의한 실적은 제외함.

－標準値 : 150백만원(매년 10%씩 체증)

－選定背景 및 뜻

募集店鋪는 保險募集을 위한 組織으로 募集人의 관리가 主要業務이다. 募集人數가 일정할 경우 募集店鋪數가 많고 적음에 따라 費用이 달라지게 되므로 募集店鋪의 數는 會社營業 및 損益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店鋪所屬 募集人의 所得財源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점포당 收益 獲得能力을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店鋪當 적정 募集人數를 25명으로 가정하여 募集人 1인당 生産性의 25배 水準으로 설정하였다. 參考로 '89사업년도말 전생보사의 店鋪當 募集人數는 29명이었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315.6백만원	258.2백만원	315.6백만원
평 균	208.4	107.5	194.2
최 저	94.7	1.8	1.8
(회사수)			
표준상회	6사	9사	15사
표준미달		13	13

－補助項目 : 없 음

〈收益性〉 : 3個項目

(7) 危險保險料 대 死亡保險金 比率

算 式

$$\frac{\text{當期死亡保險金}}{\text{當期 危險保險料}} \times 100$$

*1)危險保險料 : 解約還給金式 責任準備金 基準
2)死亡保險金 : 死亡, 傷害, 입원급부금의 지급비금 증감액 가감

10)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예정신계약비는 갑종단체의 경우 영업보험료에 대하여 판매관리비 0.3%, 유지 및 수금비 0.7%로 책정되어 있고, 을종단체의 경우 신계약비, 유지비 및 수금비를 합하여 0.3%로 책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갑종 단체계약으로 되어 있다.

11) 기존 6개 생보사의 '89사업년도 이연처리전 예정신계약비 및 수금비는 1,125,668 백만원이고, 실제 신계약비 및 수금비는 1,046,320백만원으로 7.0%의 비차익을 나타내고 있다.

－標準値 : 70% 이하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事業은 사람의 生命 및 身體에 관한 危險 즉, 死亡, 傷害, 疾病 등의 危險을 保障하는데 根本目的을 두고 있다. 死亡保險金은 保險事故에 의하여 保險加入者에게 지급하는 保險金으로 그 水準의 높고 낮음은 會社의 契約選擇 및 審査에 쏟은 노력의 成果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實際 死亡保險金과 保險料算出基礎率中 危險率에 의한 保險料를 대비하여 契約選擇의 成果를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死亡率등 豫定危險率 책정시에는 25－30%의 安全割增을 하는 것이 一般的이며[12], 保有契約中 제 1회 經驗生命表를 사용한 契約이 대부분으로서 同契約의 경우 死差配當 최고율이 危險保險料의 30% 水準으로 策定되어 있다. 따라서 最高水準의 死差配當을 하기 위한 死差益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死亡保險金이 危險保險料의 70% 수준 이하로 되어야만 經營의 健全性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동수준을 標準値로 설정한 것이다. '88-'89사업년도의 全生保社 危險保險料 대 死亡保險金 比率은 각각 66.4%, 68.6%로 나타났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56.4%	5.8%	5.8%
평 균	69.7	51.2	68.6
최 저	25.7	134.4	134.4
(회사수)			
표준상회	2사	15사	17사
표준미달	4	6	10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보험금 지급율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100
2. 보험금종류별 구성비율 변동율	전기대비 보험금종류별 구성비율 증감 합계/보험종류수(4) *만기 및 퇴직, 사망, 환급금, 배당금
3. 보험종류별 보험금 구성비율 변동율	전기대비 보험금종류별 구성비율 증감 합계/보험종류수(6)

(8) 豫定 대 總實際事業費 比率

算 式

$$\frac{\text{當期의 事業費+財産管理費+諸稅公課金+協會費+寄附金}}{\text{當期 豫定事業費}}\times 100$$

*이연처리전 금액으로 함.

－標準値 : 110%(200%) 이하 (기존사는 '91사업년도부터 5년간 2씩 체감하고, 신설사는 제 3사업년도부터는 30씩, 제 6사업년도부터는 5년간 2씩 체감)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의 保險料는 純保險料와 附加保險料로 구성되어 있어 保險契約의 募集 및 收金費用과 會社의 維持管理費用이 附加保險料 범위내에서 집행될 때에 附加保險料 부분의 均衡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總實際事業費 支出額을 豫定事業費(附加保險料)와 비교하면 事業費部門의 均衡與否와 管理成果를 評價할 수 있다.

－標準値의 根據

豫定事業費 범위내에서 總實際事業費를 執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全保險會社에서 超過事業費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最近 事業年度의 旣存 6사 平均水準으로 標準値를 설정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년

12) 제 1회 경험생명표의 남자 경우 粗死亡率에 대하여 10세부터 30세는 30%, 35세부터 40세는 26.3% 내지 20.1%, 45세부터 55세는 14.8% 내지 8.7%를 할증하였다.

일정율을 체감하도록 하였고, 新設社의 경우에는 事業初期에 超過事業費의 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保險業法上 처음 5사업년도까지의 事業費는 1/2까지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설립 1차년도의 實際事業費 水準을 豫定事業費의 200%로 정하고 경과년수에 따라 체감하도록 하였다. '88 및 '89사업년도의 全生保社 豫定 대 總實際事業費 比率은 각각 114.1%, 119.1%를 나타내고 있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실 적)	6개사	신설사	합 계
최 고	103.2%	165.5%	103.2%
평 균	109.1	236.1	119.1
최 저	132.5	3471.4	3471.4
(회사수)			
표준상회	2사	－	2사
표준미달	4	24	28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판매직접비 비율	판매직접비/(예정신계약비＋수금비)×100 *판매직접비＝비례수당＋점포운영비＋판매촉진비
2. 보장수당 비율	보장수당/(예정신계약비＋수금비)×100
3. 예정유지비 대 인건비 비율	인건비/예정유지비
4. 보험종류별 예정사업비 구성 변동율	전기대비 보험종류별 예정사업비 구성비율 증감율 합계/보험종류수(6)

(9) 豫定利率 대 運用資產 收益率

算 式

$$\frac{\text{運用資產 收益率}}{\text{平均 豫定利率}} \times 100$$

1. 평균예정이율＝

$$\frac{\text{당기예정이자}}{(\text{당기말책임준비금}+\text{전기말책임준비금}-\text{당기예정이자})\div 2} \times 100$$

2. 책임준비금＝해약식책임준비금－지급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3. 운용자산수익율＝$\frac{\text{투자수익}}{\text{경과운용자산}} \times 100$
4. 경과운용자산＝(당기말운용자산＋전기말운용 자산－투자수익)÷2
5. 투자수익＝자산운용수익－자산운용비용
6. 자산운용수익＝수입이자＋수입배당금＋수입임대료＋투자수입수수료＋유가증권평가익＋유가증권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
7. 자산운용비용＝감가상각비＋대손상각＋유가증권평가손＋유가증권처분손＋고정자산처분손＋지급이자와 할인료

－標準値 : 100% 이상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의 保險料는 豫定利率로 割引하여 산출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契約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차배당등 契約者配當을 실시하고 있어 投資收益率의 水準이 經營成果를 左右하게 된다. 그러므로 投資收益의 源泉인 運用資產을 基準으로 實際 投資收益率을 算出하고 이것과 契約者配當率이 감안된 平均豫定利率과 비교하여 資產運用部門의 收益性을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運用資產 收益率이 契約者配當水準의 利率을 超過하여야 이차부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동 수준을 標準値로 설정하였다. '88－'89사업년도의 全生保社 豫定 대 運用資產 收益率은 각각 58.9% 및 72.7%를 나타내고 있다.

*標準値를 상회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차익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님(責任準備金과 運用資產規模 차이 때문임)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93.9%	947.6%	947.9%
평 균	72.6	74.8	72.7
최 저	64.4	7.3	7.3
(회사수)			
표준상회	–	8사	8사
표준미달	6	16	22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운용자산수익율II	투자수익II/경과운용자산×100 *투자수익II＝투자수익－자산의 처분 및 평가손익
2. 상장주식 시가 비율의 변동율	당기시가비율/전기시가비율 ×100 *시가비율＝시가/장부금액 ×100

〈安全性〉: 4個項目

(10) 效力喪失解約率

算 式

$$\frac{\text{當期 效力喪失解約契約額}}{\text{前期末 保有契約額＋當期 新契約額}} \times 100$$

－標準値 : 25% 이하(기존 6개사는 '91사업년도부터 5년간 2씩 체감하고, 신설사는 5사업년도까지 1사업년도당 5씩 가산한 후 6사업년도부터 5년간 2씩 체감함)

－選定背景 및 뜻

保險契約의 效力喪失解約은 保險加入者의 經濟事情, 保險商品 및 서비스의 수준, 一般 經濟與件의 變化등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발생되게 된다. 保險契約이 效力喪失 또는 解約될 경우 解約還給金 지급으로 保險會社의 資産 및 保有契約이 減少되고 繼續保險料 수입이 중단되며 事業比率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保險契約者는 納入保險料와 解約還給金 차이에 의한 經濟的 損失을 받게 됨은 물론 保險의 效用을 느끼지 못하여 保險에 대한 否定的 認識을 갖게 되며, 당해 保險契約을 募集한 募集人은 募集努力에 대한 대가의 중단과 함께 販賣活動基盤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效力喪失解約契約의 水準은 保險會社 및 募集人의 活動에 대한 評價와 生命保險에 대한 一般大衆의 인식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서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當期에 效力喪失解約이 발생될 수 있는 契約은 前期末 保有契約과 當期新契約이므로 이에 대한 效力喪失解約의 比率로 保險契約의 질에 대한 評價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效力喪失解約率이 높은 것이 현안문제이므로 기존 6개 生保社의 직전 2사업년도중 최저치 24.2%의 근사치로 標準을 設定하고 향후 5년간 2%씩 체감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新設社의 경우에는 新契約 增加率이 높은데 비하여 效力喪失契約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되게 되므로 事業年度 經過期間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88 및 '89사업년도 기존 6개사 平均比率은 각각 29.5%, 27.0%이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27.1%	3.3%	3.3%
평 균	29.4	25.6	29.2
최 저	39.3	38.2	39.3
(회사수)			
표준상회	–	1사	1사
표준미달	6	21	27

13)엄수남, 생명보험계약의 유지율향상방안, 생보협회, 월간생협, 1988.4월호 p.8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신계약증가율	당기/전기×100
2. 효력상실해약계약 증가율	당기/전기×100
3. 보험종류별 신계약 구성비율 변동율	전기대비 보험종목별 구성비율 증감합계/보험종목수
4. 보험종류별 효력상실 해약 구성비율 변동율	전기대비 보험종목별 구성비율 증감합계/보험종목수

(11) 固定收入 대 固定費用比率

算 式

$$\frac{\text{當期의 保險金(滿期除外)+總維持費+約款貸出增加額}}{\text{當期의 2년도이후 收入保險料+投資收益Ⅱ}}$$

*1)총유지비=총실제사업비－신계약비－수금비
2)약관대출증가액=당기말－전기말
3)2년도이후 수입보험료에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제외

－標準値 : 100(200)% 이하(신설사는 제3사업년도부터 5사업년도까지 30씩 체감)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會社는 통상 收入이 支出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收入保險料中 初年度保險料는 최근의 新契約에 의한 것으로 높은 效力喪失解約率 등을 고려할 때 保險料의 納入이 전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經營與件이 급격하게 惡化될 경우 新契約에 의한 保險料收入도 減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新契約 保險料收入이 감소될 경우 支給保險金이나 約款貸出은 늘어나게 되며, 事業費中 維持費는 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시적인 감축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生命保險會社의 收支構造가 안정되기 위하여는 安定的인 2년도이후 保險料 및 投資收入으로 支給保險金 및 約款貸出 增加額과 고정적인 事業費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2년도 이후 保險料中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保險料는 去來單位가 큰데 비하여 去來團體數가 적어 安全性이 낮고, 投資收入中 資產의 處分 및 評價에 의한 것은 經常的이 아닌 臨時的인 것이므로 安定的인 收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支給保險金中 滿期保險金이나 配當金은 예측이 가능하나 死亡保險金등은 그 規模가 적어 重要性이 낮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經常的인 支出을 安定的인 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여 收支構造의 安全性을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收支構造의 安全性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經常的인 支出을 安定的인 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均衡水準을 標準値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新設社의 경우에는 收入의 規模가 적은데 비하여 事業費 부담이 커서 상당기간 收支均衡이 不可能하므로 기존 6개사의 2배 수준을 標準値 로 설정하고 5사업년도에 正常水準이 되도록 하였다. '88－'89사업년도의 全生保社의 固定收入 대 固定費用 比率은 각각 119.9% 118.5%로 나타났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102.1%	8.0%	8.0%
평 균	115.1	228.6	118.5
최 저	152.9	631.4	631.4
(회사수)			
표준상회	－	7사	7사
표준미달	6	17	23

－補助項目 : 없 음

(12) 資產運用率

算 式

$$\frac{\text{當期末 運用資產}}{\text{當期末 總資產}} \times 100$$

－標準値 : 95(85)% 이상(신설사는 제 3사업년도부터 제 5사업년도까지 3씩 가산)

－選定背景 및 뜻

資產運用收益의 極大化 및 財務의 健全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收益性을 기대하기 곤란한 非運用資產의 比重이 最小化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시점에서 收益이 기대되는 資產 즉, 運用資產의 總資產에 대한 比率을 測定하여 資產構造의 健全性을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新設社등을 고려하여 기존 6개사의 最近 事業年度 實績値中 最低値(94.2%)의 근사치 水準으로 설정하였고 新設社는 그보다 10% 낮게 하되 제 3사업년도부터 3%씩 체증하도록 설정하였다. '88－'89사업년도의 全生保社 資產運用率은 각각 97.4%, 96.8%를 나타내고 있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98.4%	93.6%	98.4%
평 균	97.5	89.3	96.8
최 저	94.8	62.7	62.7
(회사수)			
표준상회	5사	13사	18사
표준미달	1	11	12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증가자산 운용율	운용자산증가액/총자산증가액 ×100
2. 투자대상별 구성비율 변동율	전기대비 투자대상별 구성비율 증감합계/투자대상수(7) *투자대상 : 현.예금, 개인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 주식, 채권, 부동산

(13) 責任準備金 대 純財產比率

算 式

$$\frac{\text{(當期末 納入資本金+資本金 및 利益剩餘金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非運用資產)}}{\text{(當期末 解約式 責任準備金 －契約者 利益配當準備金)}} \times 100$$

－標準値 : 0% 이상

－選定背景 및 뜻

生命保險會社가 保險契約者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保險契約者에 대한 責任準備金 상당액의 資產을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14]. 純財產은 總資產에서 保險契約者에 대한 責任準備金등 負債를 제외한 金額으로 흑자인 會社는 責任準備金 수준 이상의 資產을 確保하고 있는 것이나, 반대로 적자인 회사는 責任準備金 水準의 資產을 確保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純財產額의 規模는 生命保險會社의 支拂能力 여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會社의 綜合的인 財務狀態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會計基準上 責任準備金에는 장래의 契約者 配當을 위하여 적립하는 契約者 利益配當準備金이 포함되어 있고 總資產中 非運用資產은 貸借保證金등 사무용시설이나 미수수익등 결산정리계정이 대부분이므로 保險契約에 의한 債務履行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財務諸表의 純財產에 契約者 利益配當準備金을 가산하고 非運用資產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責任準備金에서도 契約者 利益 配當準備金은 제외하여 評價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한 純財產額의 責任準備金의 比率로 綜合的인 財務構造의 健全性 및 支拂 能力의 여유수준을 평가하고

14)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75, p. 196.

자 하는 것이다.

－標準値의 根據

保險契約上의 債務의 完全한 履行을 保障하기 위하여는 保險契約에 대한 責任準備金을 포함한 負債水準 이상의 運用資産이 確保되어야 하므로 동 수준을 標準値로 설정한 것이다. '88－'89사업년도의 全生保社의 責任準備金 대 純財産比率은 각각 3.2%, 0.1%를 보이고 있다.

－'90事業年度 評價結果

구 분	6개사	신설사	합 계
(실 적)			
최 고	5.1%	338037.0%	338037.0%
평 균	△0.2	2.95	0.1
최 저	△13.5	△4.1	△13.5
(회사수)			
표준상회	3사	19사	22사
표준미달	3	5	8

－補助項目

항 목 명	산 식
1. K율	(실제적립－해약식)/(순보식－해약식)×100
2. 책임준비금 증가액 대 운용재산증가액 비율	운용자산증가액/책임준비금증가액×100

Ⅳ. 外國의 經營評價制度

1. 美 國

가. 制度의 槪要[15]

美國에서는 1978년도부터 保險監督業務의 客觀化와 保險會社의 自律的인 經營改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保險監督情報制度(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IRIS)라고 불리우는 經營評價制度를 운용하고 있다. IRIS는 2가지 단계로 운용되는데 제 1단계는 統計段階로 年次報告書에 의하여 主要財務比率 및 一般現況을 蒐集, 整理, 要約하는 段階이다. 제 2단계는 分析段階로서 年次報告書와 主要 財務比率을 관계 專門家가 分析 檢證하는 단계이다.

生命保險會社에 대한 IRIS 評價項目은 12개 項目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通常範圍를 標準比率로 設定하여 標準比率을 벗어나는 항목이 4개 이상인 회사와 전년도의 분석결과가 즉각적인 監督을 요하는 會社로 判定된 會社가 分析對象會社로 된다.

分析對象會社에 대하여는 關係專門家가 會社의 資料作成基準, 타 유사회사와의 차이점, 標準値를 벗어난 정도등에 대한 綜合的인 精密分析을 실시하고 그 결과 問題點이 있다고 판단되는 會社를 즉각적인 主意(Immediate attention)를 요하는 회사와 주의가 요망되는(Targeted attention) 會社로 分類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報告書에 그 理由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分析對象會社에 대한 報告書는 該當保險會社, 該當會社 관할 州政府의 保險監督廳과 전국의 각 保險監督廳에 통보되어 監督資料로 활용되는 한편, 自律的인 經營改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IS의 특징은 모든 保險會社에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制度가 아니라 會社 스스로 동제도의 參與를 希望한 會社에 대하여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參與하지 아니한 會社는 1차적인 監督對象會社가 된다.

IRIS는 經營評價의 一般的인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IRIS비율 分析結果 활용시의 主意事項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監督基準을 IRIS에 전적으

15) 보험감독원, NAIC 의 보험감독정보제도 pp.3-10, 1988

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州政府의 保險監督廳에서 檢査의 實施등 重要한 事項을 決定할 때에는 반드시 年次報告書 및 其他 情報事項에 의한 追加的인 分析이나 檢證을 할 것 등을 명시하므로써 同制度 運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分析對象會社의 分析結果는 非公開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IRIS 比率算式 및 標準値[16]

① 純資産(資本金과 剩餘金) 增加率

算 式

$$\frac{\text{當年度末의 純資産(資本과 剩餘金)} - \text{前年度末의 純資産(資本과 剩餘金)}}{\text{前年度末 純資産(資本과 剩餘金)}} \times 100$$

※ 유상증자와 주식발행 초과금등은 제외

- 標 準 値 : △10%이상 50% 이하
- 設定目的 : 保險會社의 該當年度 財務狀態의 改善이나 惡化狀態를 測定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과거 5년간의 株主配當政策과 會社의 支拂能力確保 政策의 일관성
  - ○ 資本損失이 發生한 投資資産 및 타사와 차이점
  - ○ 責任準備金 積立方法의 變更與否와 그 適正性 및 손익에의 영향
  - ○ 비용인자산에 의한 損失 정도

② 營業純利益率

算 式

$$\frac{\text{營業 純利益}}{\text{總 收 入}} \times 100$$

- 標 準 値 : 0% 이상
- 設定目的 : 會社의 收益性을 測定하는 일반척도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損失이 發生한 保險商品의 保險金支給率 및 死亡·傷害率
  - ○ 責任準備金積立率(收入保險料 대비 準備金增加額) 및 豫定利子 대 投資收益率 檢討
  - ○ 事業費 比率 검토(③ 사업비 비율 참조)
  - ○ 法定 最低責任準備金과 實際利率 및 死亡率에의 책임준비금 비교

③ 事業費 比率

算 式

$$\frac{\text{支給手數料} + \text{一般管理費}}{\text{收入保險料} + \text{年金 및 基金預託金}} \times 100$$

- 標 準 値 : 60% 이하
- 設定目的 : 費用側面에서의 收益性 測定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收入保險料中 新契約 收入保險料比率, 支給手數料대비 초년도보험료 비율(신계약, 초년도, 일시납 및 2년도이후 구분), 수입보험료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 검토
  - ○ 事業費 比率 過多의 受容能力 檢討(投資效率에 의한 보전, 회사의 支拂 能力 및 資産의 流動性 등)

16) Charles M. Beardsley 외 3인, Life Company Annual Statement Handbook 12-14, Booke & Company, North Carolina, 1987.

- 投資效率 → 용인자산대 비용인자산 비율, 순자산대 비용인자산 비율, 총투자자산대 계열사 투자비율, 순자산대 계열사 투자비율, 순자산대 부동산 투자비율
- 投資危險 → 지분성 투자자산(주식, 부동산 등)구성비율, 유가증권 장부 가액에 대한 법정유가증권 충당금 비율
- 投資收益性 → 예정이자 대 투자수익비율, 투자자산별 순투자수익율
- 資產의 流動性 → 현금흐름명세표, 단기투자자산 보유현황, 채권만기 상황표 검토

④ 投資收益率

算 式

$$\frac{\text{純投資 收入(投資收益-投資費用)}}{\text{(前年度末 投資資產 + 當年度末 投資資產 - 純投資 收入)/2}} \times 100$$

※ 투자자산 : 현금 + 재무제표의 투자자산 + 기발생 순투자수입 - 차입금

- 標 準 値 : 7% 이상 15% 이하
- 設定目的 : 投資部門의 收益性을 測定, 資產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질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投機性 資產 保有與否
  - ○ 系列社 投資 및 本社 設備投資의 適正性
  - ○ 免稅債券 投資의 適正性

⑤ 용인자산 대 비용인자산 비율

算 式

$$\frac{\text{비용인자산}}{\text{용인자산}} \times 100$$

- 標 準 値 : 10% 이하
- 設定目的 : 非生產的이고 危險이 높은 비용인자산의 投資程度 測定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④投資收益率 참조

⑥ 純資產 대 不動產 投資比率

算 式

$$\frac{\text{不 動 產}}{\text{純 資 產}} \times 100$$

※ 부동산 : 업무용부동산 + 담보부동산 + 투자부동산 - 저당설정금액

- 標 準 値 : 순자산 500만불 이상 회사 200% 미만, 순자산 500만불 이하 회사 100% 미만
- 設定目的 : 過多한 不動產投資로 인한 收益減少와 流動性 상실 정도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④투자수익율 참조

⑦ 純資產 대 系列社 投資比率

算 式

$$\frac{\text{系列社 投資金額}}{\text{純 資 產}} \times 100$$

※ 계열사 투자금액 :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에 대한 장단기채권, 주식, 대출등 관련투자자산 장부금액

- 標 準 値 : 100% 미만
- 設定目的 : 非收益性 系列社 投資比率 測定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 ④투자수익율 참조

⑧ 再保險剩餘金 造成率

算 式

$$\frac{\text{再保險 手數料 純收入}}{\text{純 資 產}} \times 100$$

- 標 準 値
  - ○ 자본과 잉여금이 500만불 이하인 경우 : △10%이상, 10%이하

○ 자본과 잉여금이 500만불 이상인 경우 : 99%이상, 30%이하

- 設定目的 : 再保險手數料의 剩餘金 기여도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會社의 經營特殊性 檢討(연혁, 경영방침 등)

⑨ 收入保險料 純增加率

算 式

$$\frac{\text{當年度 收入保險料} - \text{前年度 收入保險料}}{\text{前年度 收入保險料}} \times 100$$

- 標 準 値 : △100% 이상 50% 이하
- 設定目的 : 保險料收入의 安全性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없 음

⑩ 商品別 收入保險料 構成比의 變動率

算 式

$$\frac{\text{各 商品別 收入保險料 構成比의 差 合計}}{\text{總 販賣商品 數}}$$

※ 상품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차 (+, − 무시)
= 당년도의 각 상품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율
− 전년도의 각 상품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율

- 標 準 値 : 5% 이하
- 設定目的 : 保險料收入의 安全性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없 음

⑪ 投資資產別 投資構成比의 變動率

算 式

$$\frac{\text{各 投資資產別 構成比의 差 合計}}{\text{總 投資資產 數}}$$

※ 투자자산별 구성비의 차 (+, − 무시)
= 당년도의 각 투자자산별 구성비율
− 전년도의 각 투자자산별 구성비율

- 標 準 値 : 5% 이하
- 設定目的 : 投資 포트폴리오 安全性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④투자수익율, ⑨수입보험료 순증가율 참조

⑫ 準備金積立率의 變動比率

算 式

$$\frac{\text{當年度 責任準備金 積立率}}{\text{前年度 責任準備金 積立率}} \times 100$$

※ 책임준비금 적립율

$$= \frac{\text{전년대비 책임준비금 증가액}}{\text{당년도 수입보험료(일시납+2년도이후)}} \times 100$$

- 標 準 値 : △20% 이상 20% 이하
- 設定目的 : 準備金積立率의 安全性 측정
- 補助比率 또는 重點點檢事項 : 없 음

2. 日 本

가. 制度의 槪要

日本에서는 우리나라나 美國과 같이 經營評價制度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保險業法에 의거 生命保險會社가 每事業年度別로 政府의 주무부처인 대장대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事業報告書에 經營效率一覽表가 명시되어 있어 동 경영효율일람표를 토대로 監督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把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經營效率一覽表는 保有契約 純增加率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評價項目의 前年度대비 增加率, 계정간 상관관계 비율 및 構成比率에 의하여 經營效率을 評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標準値는 공표되고 있지 않다.

나. 項目別 比率算式[17)]

① 保有契約 純增加率

算 式

$$\frac{\text{當期末 保有契約額} - \text{前期末 保有契約額}}{\text{前期末 保有契約額}} \times 100$$

※ 보장내용별로 구분 산출함(보통사망, 재해사망, 생존보장, 입원보장, 장애보장, 수술보장)

② 新契約 平均保險金額

算 式

$$\frac{\text{新契約 保險金額}}{\text{新契約 件數}}$$

※ 보장내용별로 구분 산출함

③ 保有契約 平均保險金額

算 式

$$\frac{\text{保有契約 保險金額}}{\text{保有契約 件數}}$$

※ 보장내용별로 구분 산출함

④ 新契約率

算 式

$$\frac{\text{當期 新契約額}}{\text{前期末 保有契約額}} \times 100$$

※ 개인(생존, 사망, 양로, 연금), 단체(사망, 양로)로 구분 산출함.

⑤ 效力喪失. 解約率

算 式

$$\frac{\text{當期 效力喪失.解約契約額}}{\text{前期末 保有契約額}} \times 100$$

※ 개인(생존,사망,양로,연금), 단체(사망,양로)로 구분 산출함.
감액 또는 증액, 부활 계약액 효력상실. 해약 계약액에 수정

⑥ 個人保險 新契約 平均保險金

算 式

$$\frac{\text{當期 新契約額}}{\text{新契約 件數}}$$

※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구분 산출함

⑦ 個人保險 新契約 平均保險料

算 式

$$\frac{\text{當期 新契約 初回保險料의 年間換算 金額}}{\text{新契約 件數}}$$

※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구분 산출함

⑧ 保險契約 維持率

算 式

$$\frac{\text{當期中 回次別 維持契約額}}{\text{該當 新契約額}} \times 100$$

※ 월납 13회, 3월납 3회, 연납 2회로 구분 산출함

⑨ 事業費 比率

算 式

$$\frac{\text{實際 事業費}}{\text{豫定 事業費}} \times 100$$

※ 상품별, 부문(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별로 구분 산출함
수입보험료대비 실제사업비 비율을 별도로 산출함
실제사업비에는 재산관리비,제세공과,협회비, 기부금 등 포함

⑩ 資產運用率

算 式

$$\frac{\text{運用 資產}}{\text{總 資 產}} \times 100$$

※ 현예금, 콜론, 금전신탁, 유가증권(공사채, 주식, 외국증권으로 구분), 대출금(일반대출 구분), 부동산(투자용 구분), 기타자산으로 구성비 별도산출 (특별계정 제외)

17) 생명보험필휴, pp.460-463, 재경상보사, 1991

⑪ 資產運用 收益率

算 式

$$\frac{\text{資產運用 收益}}{\text{平均 資產}} \times 100$$

※ 총자산, 운용자산, 금전신탁, 유가증권(공사채, 주식, 외국증권으로구분), 대출금(일반대출, 약관대출구분), 부동산(투자용구분)으로 구분하여 수익율 산출 일평잔 방식과 Hardy 방식 수익율을 모두 산출함(특별계정 제외)

⑫ 株式 시가비율

算 式

$$\frac{\text{주식 시가}}{\text{장부 금액}} \times 100$$

※ 특별계정 제외

⑬ 責任準備金 積立率 및 이회율

算 式

$$\text{責任準備金 積立率} = \frac{\text{實積立準備金}}{\text{純保險料式 準備金}} \times 100$$

※ 특별계정 및 위험준비금 제외

$$\text{책임준비금 이회율} = \frac{\text{자산운용수익}}{\text{평균책임준비금}} \times 100$$

※ 특별계정 제외

V. 現行 經營評價制度의 發展方案

1. 一般的인 規制와의 重複 最小化

監督院의 經營評價制度는 그 목적을 生命保險會社의 自律的인 經營向上 및 內實經營誘導와 生命保險會社의 指導監督에 필요한 基礎資料로 活用하는데 두고 있으며 評價結果 問題點이 發見된 會社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을 促求하거나 經營改善 計劃을 징구하고 있다. 그러나 經營評價制度와는 별도로 生命保險會社의 募集, 契約, 資產運用등 業務分野別로 懸案問題點의 解決 또는 經營效率改善을 위하여 監督上의 指導基準을 정하고 그에 未達된 會社에 대하여는 別途의 措置를 취하는등 具體的인 監督을 實施하고 있으나 이러한 監督基準은 모든 生命保險會社에 共通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效力喪室.解約 防止對策, 募集人定着率 改善方案등을 그 실예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모든 保險會社에 대하여 統一的인 基準을 정하여 監督을 하는 方法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合理的인 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監督對象機關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監督機關 스스로 經營資源 配分의 效率性 問題를 야기할 수 있다. 監督規制가 중복된 경우에도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는 現實的으로 受容可能한 범위내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한다.

一般的인 規制와의 重複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監督規制의 緩和 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監督規制의 일시적인 완화는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監督規制의 緩和에 앞서 먼저 監督對象이 되는 會計資料등 필요한 情報의 內容과 範圍를 명확히 하고, 그 報告 및 分析體系를 構築한 뒤에 波及效果가 적은 部分부터 段階的으로 완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會計制度의 整備와 전산망 構築이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

2. 評價制度의 時宜性 提高

生命保險 經營評價制度의 目的은 生命保險會社의 經營實態를 정기적으로 把握하여 經營上 問題點을 早期에 發見 치유함으로써 經營의 健全性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生命保險 經營評價는 事業年度別로 決算實績을 修正하여 實施하므로써 시의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事業年度別 經營評價는 公表되는 決算資料를 評價資料로 利用함으로서 評價結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長點은 있으나 評價週期가 길어 계절적인 問題點의 發見을 어렵게 하고 問題點이 상당히 進展된 뒤에 發見하게 된다는 短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最近 保險市場 開放으로 多數의 生命保險會社가 新設되었는 바, 新設社는 保險事業의 연륜이 짧아 經營의 Know-how, 經營規模, 組織力등의 劣勢와 초기의 事業費 負擔등의 問題를 안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保險會社로부터 매월 提出되는 月末報告書를 活用하여 評價가 可能한 範圍內에서 月 또는 分期등의 評價를 事業年度別 評價와 竝行하여 실시함으로써 經營評價制度의 시의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資產評價의 一貫性 確保

現行 生命保險 經營評價基準은 有價證券에 한하여 資產評價를 實施하도록 하고 있다. 財產運用을 고유의 目的事業으로 하는 生命保險會社의 經營評價를 함에 있어 投資資產의 評價方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處理方法이 2가지 이상 있어 評價對象機關의 會計處理方法에 差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資產價額의 變動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時間이 經過하거나 貨幣價值가 變動됨에 따라 資產의 貨幣評價額이 變動되는 非貨幣性資產의 資產價值를 評價하여 投資成果를 把握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세째, 貨幣性資產의 投資價額을 收益價值에 의하여 評價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生命保險會社의 資產項目을 檢討하여 보면, 첫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資產으로는 株式을 들 수 있다. 株式의 경우 總資產의 11.8%[18] 가 投資되어 있는데, 저가기준에 의한 시가평가의 會計處理基準이 株式總額 또는 種目을 基準으로하여 評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資產으로는 지분이나 實物投資에 해당하는 株式과 不動產을 들 수 있다. 株式이나 不動產의 貨幣評價額은 評價方法 및 評價時點에 따라 달라지게될 뿐만 아니라 配當이나 賃貸收益은 물론 價格變動에 의한 市勢差益을 기대하여 투자하기 때문이다.

세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生命保險會社의 주된 投資手段인 預金, 貸出金, 株式, 債券, 不動產이다. 預金의 경우 약정이자율이 預金種類에 따라 다르고, 貸出金 및 債券의 경우도 약정이자율이 去來處 및 種目別로 다르다. 또한 株式 및 不動產도 株式의 種目, 不動產의 位置, 面積, 構造등에 따라 配當率 및 賃貸收益이 달라지므로 실현된 收益으로 收益價值를 평가할 경우 그 액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現行 經營評價制度의 資產評價基準은 有價證券의 경우,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 시세에 의하여 평가하고 債券은 貸出金 最高利率로 評價하도록 되어 있으며, 其他의 資產은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18) '92. 2월말 현재 전생보사의 총자산은 37,629,776백만원이며, 주식은 4,448,994백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규정되어 있다. 株式을 시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의 둘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債券의 경우는 세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投資資産中 有價證券에 한정하여 별도평가를 실시하는 현행 經營評價制度의 資産評價基準은 資産評價에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資産評價의 一貫性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預金, 貸出金, 不動産에 대해서 債券 또는 株式과 같이 收益價値 및 市場價値로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預金이나 貸出金은 1년 이하의 短期로 運用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利率差異가 근소하므로 重要性 및 評價業務의 편리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不動産의 경우는 物件의 位置, 面積, 構造, 施設內容등 物件自體의 차이에 의한 市場價格 差異는 물론, 資産再評價 實施與否 등에 따른 金額差異도 상당히 크다. 또한 不動産은 財産運用의 主要手段으로서 그 評價方法에 따라 投資成果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경영평가시 不動産 評價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不動産 評價의 一般的 方法은 복성식 평가법, 매매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19]등이 있다.

복성식 평가법은 評價時點의 不動産 再調達 原價를 구하여 감가액을 수정한 금액을 評價價額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代替의 原則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 長點이나, 재조달원가와 감가액을 파악하는데 技術的인 애로가 있고 土地는 再生産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短點이 있다. 매매사례비교법은 매매사례 不動産과 평가대상 不動産의 가격시점 및 유용성을 비교하여 산출한 유추가격으로 對象不動産의 價格을 評價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도 대체의 原則에 理論的 根據를 두고 있고, 모든 不動産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長點이 있는 반면, 農業地域, 學校, 敎會등과 같은 特殊不動産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短點이 있다. 수익환원법은 評價對象不動産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純收益을 資本으로 還元하여 평가시점 현재의 不動産 評價額으로 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收益이 발생하는 資産評價에 특히 有益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收益 發生이 없거나 把握이 곤란한 不動産은 적용이 곤란하다는 제약이 있다.

生命保險會社의 不動産은 收益을 기대하여 投資하게 되며, 經營評價에 있어서의 不動産 評價目的도 收益性을 評價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의 방법중 收益還元法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實際評價에 있어서 賃貸不動産이 아닌 自家使用不動産은 賃貸部分의 評價額과 장부가액비율로 평가할 경우 적용상 무리가 없다고 본다.

4. 標準値의 合理的 設定

經營評價에 있어서 標準値는 評價結果를 判斷하는 基準이 되며, 評價目的에 따라 標準値의 水準이 다르게 된다. 즉, 實績値가 標準에 未達하였을 때 ① 標準値가 目標値로 설정되었을 경우는 目標에 未達하는 狀態를 나타내고 ② 標準値가 平均値로 설정되었을 경우는 平均에 未達한 狀態가 되며, ③ 標準値가 最低値로 설정되었을 경우는 극

19) 이송만, 도성환, 부동산 감정평가론, 매일경제신문사, 1988, pp. 76-146

허 不良한 狀態로 評價된다.

現行 經營評價基準의 項目別 標準値는 원칙적으로 監督側面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水準으로 하되, 이미 制度化되어 있는 것은 그 水準으로 하였고, 理論的으로 合理的인 水準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理論的인 水準으로 하였으며, 그 이외의 것은 過去의 實績値중에서 平均値, 最高値, 最低値의 근사치로 설정되어 있으며, 영업개시후 5사업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新設社에 대해서는 差等을 두고 있다.

그러나 統計學의 確率理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科學에서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誤差가 認定되고 있으며, 現實的으로 항상 一定한 誤差의 範圍는 存在한다. 또한 經營評價制度의 窮極的인 目的은 監督機能의 合理的 遂行을 위하여 監督手段 行事를 客觀化하고 監督對象機關의 自律的인 經營改善을 誘導하는데 있으므로 項目別 實績이 例外的인 것인가 通常的인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新設社에 대하여 標準比率을 달리 적용한 것은 現實的으로 設立初期의 會社와 設立後 相當期間이 經過한 會社는 經營規模, 組織등 여러가지 면에서 差異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會社間 比較性의 상실, 標準値의 差異에 대한 客觀的 거증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의 問題가 있다.

따라서 經營評價의 標準値를 一定水準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一定範圍로 설정하고 比較性이 確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精密分析體制의 構築등

經營評價의 根本的인 目的은 經營上의 問題點을 解決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問題點의 解決을 위해서는 그 要因을 명확히 糾明하는 데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經營評價制度는 評價項目의 實績値 變動內容을 파악하기 위하여 補助項目을 두고 있으나 보조항목만으로 問題點의 要因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一部項目의 경우 약간의 問題點을 內包하는데 예를 들면 專門募集人 純增加率의 경우 評價對象이 되는 專門募集人을 정함에 있어 募集人等級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등록후 1년이상이 된 募集人中 일반 2급이상인 募集人으로 하고 있고, 募集人 等級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會社나 設立後 1년미만인 회사는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募集人으로 하고 있으며, 募集人制度가 없는 會社는 所得이 30만원 이상인 代理店數로 하고 있다.

專門募集人을 위와 같이 정할 경우, 어떤 회사는 업적과 勤務期間을 고려하고, 어떤 會社는 업적에 의한 所得을 基準으로 專門募集人을 判定하는 結果가 되어 評價資料의 동질성이 상실되며 그에 따라 評價結果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期間中 收支의 均衡與否를 評價하는 固定收入 대 固定費用 比率의 경우에 있어서도 支出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還給金의 경우, 初年度保險料 부분에서도 중도해약이나 效力喪失이 발생되고 있으며, 保險資產은 收益追究의 성격을 갖는 결과 수지차부문은 곧바로 운용되게 되는 것이므로 동 비율만으로 收支의 均衡與否 즉, 短期支給能力을 評價하는 데에는 무리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問題를 改善하기 위하여는 持續的으로 評價項目을 改善 補完하여야하며, 모든 報告資料의 相互間 聯關 分析이 가능하도록 報告制度를 改編하여 회사별 評價結果 差異에 따른 要

因이 규명될 수 있는 精密分析體系가 構築되어야 할 것이다.

Ⅵ. 맺는 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保險監督의 課題는 保險會社의 支拂能力 確保와 保險制度의 有用性 擴大와의 調和에 있다고 보고 있다. 保險制度의 有用性을 擴大하기 위하여는 競爭을 促進시키는 것이 가장 效果的인 方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法的인 規制를 緩和하므로써 實現될 수 있다.

競爭의 促進은 經營의 自主性과 創意에 의한 자유로운 競爭으로 經營의 效率性을 增進시키게 되어 原價의 節減, 保險商品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그 질의 개선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競爭力이 不足한 限界企業은 支拂不能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經營評價制度는 競爭의 促進과 支拂能力의 確保라는 監督上의 課題를 조화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開發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즉, 經營評價結果 問題가 많은 會社에 대하여는 강력한 監督을 실시하고, 經營을 잘하고 있는 會社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監督에 그침으로서 支拂能力 確保와 經營의 自律性 保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現行 生命保險 經營評價制度는 시행기간이 짧아 制度自體에도 많은 問題點이 內在되어 있으며, 募集, 契約, 資產運用등 業務部門別로 個別的인 監督基準이 병존하고 있어 經營評價制度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經營評價制度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첫째, 一般的인 規制와의 重複 최소화

둘째, 月 또는 分期 經營評價의 實施를 통한 評價制度의 시의성 제고

세째, 資產評價의 一貫性 確保를 위한 不動產 評價의 實施

네째, 標準値의 合理的 設定

다섯째, 精密分析體制의 構築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經營評價制度는 經營評價制度 自體의 특성상, 주관성의 개재, 過去資料에의 依存, 評價資料의 統一性 問題등 여러가지 면에서의 限界를 지니고 있어 經營評價制度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으로 經營의 問題點을 도출하여 解決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制度의 補完과 함께 經營評價結果를 이용하는 監督當局 및 對象機關인 保險會社 任職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와 理解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生命保險 經營評價制度가 生命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批判과 고견을 바라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李正圭, 經營分析要論, 法文社, 1984.

金健佑, 經營分析入門, 韓國經濟新聞社, 1989.

林陽澤, 改訂統計學, 大英社, 1984.

李松晩, 都成煥, 不動產 鑑定評價論, 每日經濟新聞社, 1988.

大藏省, 銀行局 保險部, 生命保險研究會, 生命保險必携, 財經洋報社, 1991.

生命保險講座 第4卷 危險選擇, 生命保險協會, 1985.

金寅鎬, 經營政策과 戰略的 經營, 比峰出版社,

1989.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75.

全生命保險會社 經驗生命表(1982-1984), 韓國保險計理人會, 1988.

NAIC의 保險監督情報制度, 保險監督院, 1988.

金融機關의 새로운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日本), 保險監督院, 1991.

全泰榮, 生命保險會社에 있어서의 保守主義會計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4.

古瀨政敏, 生命保險會社의 Solvency 確保와 早期警戒裝置, 생명보험경영 55권 제2호, 1987.3.

嚴壽南, 生命保險契約의 維持率 向上 方案, 月刊生協, 生命保險協會, 1988.4.

Charles M. Beardsley외 3인, Life Company Annual Statement Handbook, Booke & Company, North Carolina, 1987.